

#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09호 2020. 11. 09.(월)

##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530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531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7
- 고창군 조례 제2532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고창군 조례 제253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13
- 고창군 조례 제2534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1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22

회 람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0-1613호 고창 군계획(청솔제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24
- 고창군 공고 제2020-1622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27
- 고창군 공고 제2020-162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구역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41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1월 9일**

고창군 조례 제 2530 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117번지”를 “11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8-1번지”를 “158-1”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봉준로 414-24번지(고창고인돌휴게소)”를 “서해안고속도로 80(고창고인돌휴게소(상))”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판매장 :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81(고창 고인돌휴게소(하)부지내)에 둔다.
  - 5. 선연웰빙플라자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64(선운산도립공원 내)에 둔다.
- 제5조제4항 중 “마케팅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판매장 : 농특산품·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5. 선연웰빙플라자 : 농특산품·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1·2층

제16조제3항 전단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또는 직전에 사용허가(위탁 선정)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매장) 사용연장 신청서

사용현황

- 수탁자(단체):
-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용료:                    원/1년

수익분석(총괄)

단위: 천원

구 분	투자금액	수 입	지 출	순수익	비 고
계					
판매장					
음식점					
-					
-					
인건비					
운영비					
기 타					

사용연장

-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지분석결과 의견
- 연장신청 사유(향후계획 포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사업장 주소: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 결산보고서 1부(수익분석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 . 사업계획서 1부

처리기한  
30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략)</p> <p>② 판매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p> <p>1. 제1판매장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u>117번지</u> 내에 둔다.</p> <p>2. 제2판매장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u>158-1번지</u>(선운산도립공원 내)에 둔다.</p> <p>3. 제3판매장 : 고창군 신림면 <u>전봉준로 414-24번지</u>(고창고인돌휴게소 부지내)에 둔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생략)</p>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 <u>117</u> -----.</p> <p>2. ----- --- <u>158-1</u>----- -----.</p> <p>3. ----- 서 <u>해안고속도로 80(고창고인돌휴게소(상))</u> -----.</p> <p>4. 제4판매장 : 고창군 신림면 <u>서해안고속도로 81(고창고인돌휴게소(하))</u> 부지내)에 둔다.</p> <p>5. <u>선연웰빙플라자</u>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u>164(선운산도립공원 내)</u>에 둔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u>마케팅팀장</u>으로 한다.</p> <p>제9조(시설용도) 판매장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고, 사정에 따</p>	<p>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담당팀장</u>-----.</p> <p>제9조(시설용도) ----- -----</p>

라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시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사용신청) ①·② (생략)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판매장 : 농특산품·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5. 선연웰빙플라자 : 농특산품·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1·2층

제16조(사용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① -----  
-----  
-----  
----- 3년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

<신 설>

<신 설>

제21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5조(지도·감독) 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승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25조(지도·감독) ① -----  
-----  
----- 담당 부서의 장 -----  
-----.

②·③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1월 9일

고창군 조례 제 2531 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위탁 선정)를 받은 자는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1월 9일**

고창군 조례 제 2532 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고창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고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영 제74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 <u>재난관리기금</u>-----.</p>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u>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p>
<p>1. 법 제67조의 다른 적립금</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p>
<p>2.·3.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p>	<p>1. <u>고창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p>

-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 5. 그 밖의 사항(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고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

<p>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u>영 제74조제1호</u>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p> <p>②·③ (생략)</p>	<p><u>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u></p> <p>2) <u>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u></p> <p><u>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u></p> <p>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  <u>영 제74조</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1월 9일**

고창군 조례 제 2533 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사항
  - 가. 장애인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장애인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다.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아.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자. 장애인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3. 장애인 직업재활(직업적응훈련)시설에 관한 사항

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관한 사항

나.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마. 그 밖의 지역사회연계 및 훈련장애인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사항 등

제5조제1호 중 “장애인”을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의 명칭	위 치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9
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108-4
고창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108-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p> <p>2. 장애인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p> <p>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p> <p>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p> <p>5. 장애인 교육·직업재활에 관한 사항</p> <p>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p> <p>7.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에 관한 사항</p> <p>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에 관한 사항</p> <p>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p> <p>10.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p>	<p>제4조 (업무 및 기능) ----- -----.</p> <p>1.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사항</p> <p>가. 장애인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장애인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p> <p>다.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p> <p>라.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p> <p>마.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p> <p>바.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에 관한 사항</p> <p>사.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에 관한 사항</p> <p>아.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p> <p>자. 장애인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p> <p>차.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항

- 11. 장애인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시설의 이용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 다.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직업적응훈련) 시설에 관한 사항

- 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에 관한 사항
- 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마. 그 밖의 지역사회연계 및 훈련장애인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사항 등

제5조(이용대상)①-----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 신청이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생략.

<신 설>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의 명칭	위 치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울계리 113번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  
-----  
-----.

② 현행과 동일

제5조의2(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의 명칭	위 치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9
고창군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108-4
고창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108-4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1월 9일**

고창군 조례 제 2534 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

제20조 본문 중 “실적비로”를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제17조(교부결정)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p>
<p>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제20조(교부방법) ----- -----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하고----- ----- ----- ----- -----.</p>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1월 9일

고창군 규칙 제11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료 반환)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u>다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잔여 계약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u>            1. · 2. (생   략)</p>	<p>제6조(사용료 반환)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u>            1. · 2. (현행과 같음)</p>

**고창군 공고 제2020 - 1613호**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고창 군계획시설(수변공원)로 결정 고시된 청솔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안)을 결정하기 전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06일  
고 창 군 수

1.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3	청솔제 공원	수변 공원	고창읍 도산리 856번지 일원	91,665	-	91,665	전북도고시 제2019-178 (2019.8.2)호	

2.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청솔제공원 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 축 면 적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1,665	100.0	368.95	645.82	2층	
공원시설	28,858	31.5	368.95	645.85	2층	
도로 및 광장	8,692	9.5	-	-	-	
조경시설	13,290	14.5	-	-	-	
휴양시설	4,918	5.4	-	-	-	
운동시설	624	0.7	-	-	-	
편익시설	1,334	1.4	368.95	645.82	2층	
공원시설 외	62,807	68.5	-	-	-	

## 나. 청솔제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 조서

시설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총 계			91,665	100.0	368.95	645.82	
공원시설			28,858	31.5	368.95	645.82	
도로 및 광장	소 계		8,692	9.5	-	-	
	1-1	진입도로	1,699	1.9	-	-	
	1-2	관람열차로	2,949	3.2	-	-	
	1-3	산책로	2,862	3.1	-	-	
	1-4	입구광장	678	0.7	-	-	
	1-5	수변광장	504	0.6	-	-	
조경 시설	소 계		13,290	14.5	-	-	
	2-1	습지관찰데크	195	0.2	-	-	
	2-2	생태습지	4,405	4.8	-	-	
	2-3	하늘비춤여못	943	1.0	-	-	
	2-4	선사식물원	3,077	3.4	-	-	
	2-5	초지체험원	3,069	3.4	-	-	
	2-6	관찰데크	138	0.1	-	-	
	2-7	선사여울원	1,207	1.3	-	-	
	2-8	수변경관데크	26	0.3	-	-	
휴양 시설	소 계		4,918	5.4	-	-	
	3-1	하늘비춤쉼터	386	0.4	-	-	
	3-2	바람자리전망대	454	0.5	-	-	
	3-3	움집쉼자리	1,090	1.2	-	-	
	3-4	소풍자리	2,938	3.2	-	-	
	3-5	여울쉼터	50	0.1	-	-	
운동 시설	소 계		624	0.7	-	-	
	4-1	열매체험원	624	0.7	-	-	
편의 시설	소 계		1,334	1.4	368.95	645.82	
	5-1	전시체험관	880	1.0	368.95	645.82	
	5-2	관람열차정거장1	236	0.2	-	-	
	5-3	관람열차정거장2	102	0.1	-	-	
	5-4	관람열차정거장3	116	0.1	-	-	
공원 시설외	소 계		62,807	68.5	-	-	
	6-1	공원시설외	62,807	68.5	-	-	

다. 도로계획 결정 조서

1) 도로결정 총괄조서

구분	총 계			3 류			산 책 로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5	2,662	7,510	4	1,408	4,648	21	1,254	2,862
소로	4	1,408	4,648	4	1,408	4,648	-	-	-
산책로	21	1,254	2,862	-	-	-	21	1,254	2,862

2) 도로세부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번호	폭원(m)					
합계	-	-	-	-	2,662	-	-	-
신설	소로	3-1	4.0	진입도로	425	소(국)12-167	수변광장	단지내도로
신설	소로	3-2	3.0	관람열차로	277	중(집)2-기1	소로3-1	관람열차도로
신설	소로	3-3	3.0	관람열차로	343	소로3-1	소로3-1	관람열차도로
신설	소로	3-4	3.0	관람열차로	363	소로3-1	중(집)2-기1	관람열차도로
신설	산책로	1	3.0	산책로	48	중(집)2-기1	산책로2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2	2.0-5.0	산책로	192	소로3-1	소로3-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3	2.0-5.8	산책로	282	소로3-1	바람자리전망대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4	2.0	산책로	118	산책로3	산책로8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5	2.0	산책로	75	산책로3	움집집자리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6	2.0	산책로	15	선사식물원	산책로4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7	2.0	산책로	37	선사식물원	산책로4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8	2.0	산책로	47	소로3-1	움집집자리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9	2.0	산책로	50	관람열차정거장3	수변광장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0	2.0	산책로	54	수변광장	수변경관데크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1	1.5-2.8	산책로	86	여울쉼터	수변광장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2	1.5	산책로	32	여울쉼터	수변광장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3	1.5	산책로	31	산책로11	수변경관데크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4	1.2	산책로	21	선사여울원	산책로13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5	1.2-2.5	산책로	35	선사여울원	선사여울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6	1.2	산책로	8	여울쉼터	선사여울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7	1.5	산책로	15	산책로9	여울쉼터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8	2.0-3.2	산책로	38	초지체험원	관찰데크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19	1.2	산책로	16	선사여울원	산책로18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20	1.2-2.1	산책로	42	선사여울원	선사여울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산책로	21	1.2	산책로	12	초지체험원	선사여울원	보행자전용도로

4. 관계도면 : 붙임(게재생략)

5.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도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고창군 건설도시과(☎ 063-560-2566)

7. 의견제출 : 위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고창군 공고 제2020-1622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05일

고 창 군 수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연공원법」 및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에 따라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수탁운영자의 의무 및 금지 등(안 제4조~제11조)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위탁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항 규정

- 위탁운영 기간(5년 이내), 수탁운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탁료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사전예약,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등 (안 제12조~제15조)

-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예약 가능, 예약 후 2일 이내 사용료 전액 납부
-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 시 환급기준 마련
- 다. 사용자 준수사항 등 (안 제17조~제18조)
- 시설사용의 제한 및 취소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사고 발생 시 책임 등
  -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등

###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산림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85-932/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6(아산면,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산림공원과(전화: 063-540-8683, 팩스: 063-560-2709)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 (063-560-2256)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 고창군 규칙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4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캠핑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군수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① 캠핑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한다.

② 캠핑장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캠핑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제6조(위탁계약 등)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캠핑장 시설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해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 또는 허용

제10조(위탁료 및 사용료) 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마다 위탁료 또는 사용료를 최초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하되, 2차연도부터는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 등의 원

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 및 재산 평정가격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1조(협약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사용허가 포함)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캠핑장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전예약 등)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선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관리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고창군이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30인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바.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별표 3)

제18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별표 1 ~ 3

[별지 제1호 서식]

##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법인)명		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부동산	기타
		억원	억원	억원
직원수				

고창군 고창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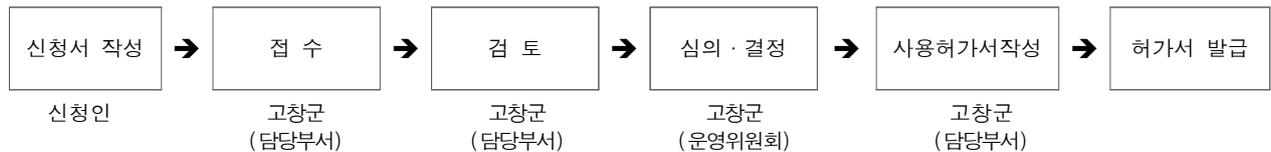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없음
------	--	----

### 처리절차



## [별표 1]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일반(4인)	1일	30,000	25,000	25,000	2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일반(6인)	1일	35,000	30,000	30,000	25,000	"
일반(8인)	1일	50,000	45,000	45,000	40,000	"
자가카라반	1일	40,000	35,000	35,000	30,000	"
글램핑	1일	150,000	135,000	140,000	110,000	"

##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1면의 캠핑사이트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1면의 캠핑사이트에 텐트 1동 추가시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20%
  - 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40%
  - 다.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60%
  -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내용	반환기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90%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80% 환급
	사용 당일 취소	70% 환급
관리자의 사정 또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 비고

-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이곳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객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 o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캠핑장 이용객 수칙 미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2. 시설 사용료

- o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o 시설 이용객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이용

- o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2:00부터 07:00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o 자동차 진·출입 시 통학로 주변 통과 시에는 규정 속도와 안전 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 o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 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o 사찰 및 상가, 숙박업소가 주위에 있어 사용 시 고성방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o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o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으셔야 합니다.

7. 반려동물

- o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o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o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및 판매

- o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o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긴급사태

- o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구역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고창군 공고 제 2020-162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 고창군수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대표자 (성명)	이상현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여의동651)
소하천명		무장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1200번지		
	면적	영구 6.28㎡ 일시 62.8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년 06월 일 ~2024년 01월 일		
	목적 및 사유	대산계통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따른 지하시설물 매설공사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치 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1200번지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1200번지